#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장학금 관리 지침

전부개정 2017. 5. 1.
일부개정 2018. 4. 1.
일부개정 2019.12. 1.
일부개정 2020.08.11.
일부개정 2021.12.17.
일부개정 2022.11.28.
일부개정 2023. 7.18.
일부개정 2023.12.14.
일부개정 2024. 8.12.
일부개정 2024.10.1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장학금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강릉원주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하는 학생(신입생 포함)에 대한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리 대학교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교외 장학 단체(개인 포함)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학비감면장학금”은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감면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② “근로장학금”은 우리 대학교에서 지정한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학비 마련과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제고하고자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③ “해람장학금”은 학생들의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별 장학금 특성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제4조(장학금의 구분 및 종류)** ① 이 지침에 의한 장학금은 규정 제4조의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교내장학금은 학비감면장학금, 근로장학금, 해람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③ 교외장학금은 외부의 장학재단 또는 각종 단체 및 개인이 정하는 장학금 명칭에 따라 구분한다.

**제5조(학비감면장학금)** ① 학비감면장학금은 성적우수장학금, 특별면제장학금, 기타감면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학비감면장학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1. A급 : 수업료 전액 면제
2. B급 : 수업료 80% 면제
3. C급 : 수업료 40% 면제
4. D급 : 수업료 20% 면제

③ 장학생 선발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성적을 원칙으로 하나, 교환학생 등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성적산출이 가능한 최근학기 성적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규정학기 초과자는 수강학점에 따라 감액된 등록금을 기준으로 장학금액을 재산정한다.

⑤ 성적우수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장학생 선발기준은 〈별표1〉, <별표1-1>과 같다.
2. 장학생은 해당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선발한다. 단, 신입생은 제외한다.

⑥ 특별면제장학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학생, 저소득층 학생, 체육특기자 학생, 장애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장학금의 종류별 수혜자격 및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⑦ 기타감면장학금은 성적우수장학금과 특별면제장학금에 속하지 않는 장학금으로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계획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근로장학금)** ① 근로장학금은 국가근로장학금과 일반근로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국가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③ 일반근로장학금은 별도 계획에 따라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기준을 정한다.

**제7조(해람장학금)** 해람장학금의 종류와 선발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8조(교외장학금)** ①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1. 장학금을 지원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서 자격조건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조건을 갖춘 자
2. 장학금을 지원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서 자격조건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학비마련이 곤란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장래가 촉망되며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0이상인 자

② 장학금의 지급 및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9조(장학생 선발과 지급)** ① 장학생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소속 대학(원)장 또는 학과(부)장, 학과(전공) 주임교수가 추천하며, 이 지침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추천 없이 선발할 수 있다.

1. 장학금을 지원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서 자격조건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조건을 갖춘 자
2. 장학금을 지원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서 자격조건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학비마련이 곤란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장래가 촉망되며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0이상인 자

②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수혜하는 경우 교외장학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 지침에서 규정한 모든 장학생에 대한 선발은 총장이 최종 확정한다.

**제10조(기타사항)**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2. 11. 28.>**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삭제<2023.12.14.>

**부칙 <2023. 7.18.>**

(시행일) 이 지침은 2023.9.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자아실현 장학금과 외국인학생 장학금은 2024. 1학기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12.14.>**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8.12.>**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0.14.>**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 성적우수장학금 선발 및 지급 기준(제5조 5항 1호 관련)

| 장학금 등급 (상한) | 장학생 선발 기준 | | 비 고 |
|---|---|---|---|
| | 신입생 | 재학생 | |
| A급 | 모집인원의 5% 이내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A^0$ 이상인자 | - 등록금범위 내 중복지급가능<br>- 장학금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으로 조정 가능 |
| B급 | 모집인원의 10% 이내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B^+$ 이상인자 | |
| C급 | 모집인원의 15% 이내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B^0$ 이상인자 | |
| D급 | 모집인원의 30% 이내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 이상인자 | |

※ 최저 성적 기준으로 장학생 선발 과정은 배정 인원에 따라 별도 진행

※ 신입생은 최초 합격자를 대상으로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를 구분하여 성적순으로 선발

※ 학기별 비교과 활동 체인지 이수시간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함

<별표1-1>

## 입학성적우수장학금 지급 기준(제5조 5항 1호 관련)

| 입학구분 | 장학금 등급 (상한) | 장학생 선발 기준 | 비 고 |
|---|---|---|---|
| (수시・정시) 최초합격자 | A급 | 모집인원의 5% 이내 | - 등록금범위 내 중복지급가능<br>- 장학금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으로 조정 가능 |
| | B급 | 모집인원의 10% 이내 | |
| | C급 | 모집인원의 15% 이내 | |
| | D급 | 모집인원의 30% 이내 | |
| (수시) 최초합격자 | 수업료 10%면제 | 모집인원의 40% 이내 | |
| (수시) 충원합격자 | 수업료 10%면제 | 수시 충원합격자 전원 | |

※ 최초합격자로서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 상위 60%를 구분하여 성적순으로 A~D급을 선발하며, 수시 최초합격자 하위 40%와 수시 충원합격자는 등록금의 10%를 감면

<별표2>

## 특별면제장학금 수혜자격 및 지급기준(제5조 6항 관련)

| 장학금명 | 수혜자격(대상) | 지급 기준 및 범위 | 장학등급 | 지급재원 | 제출서류 |
|---|---|---|---|---|---|
| **희망나눔 장학금** | 해당 시·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지정된 자와 저소득층으로 인정되는 학부생 |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소득분위 확인자)**<br>-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및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br>○ **기타 저소득 인정자**<br>- <별표5> 희망나눔장학금 수혜자격 및 지급기준에 따름<br>※ 등록금 면제대상자의 30%(인원대비)이상을 저소득장학생으로 선발 | **A~D급** | 대학회계 | - 국가장학금 신청<br>- 수급자증명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br>- 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 |
| **국가유공자 장학금**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에 규정된 학부생 | ○ **유공자 본인의 경우**<br>- 직전학기 성적제한 없음 | **A급** | 대학회계 |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br>-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 |
| | | ○ **유공자 자녀인 경우**<br>-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이상인 자 | **A급** | | |
| **체육특기자 장학금** | 체육특기자로서 체육부장의 추천을 받은 학부생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자 | ○ **신입생**: 입시요강에서 인정하는 대회 성적 기준 | | 대학회계 | 입상 실적 확인서<br>국가대표 선발 확인서 |
| | | - 전국규모이상의 대회 우승자 | **A급** | | |
| | | - 전국규모이상의 대회 준우승자 및 3위 입상자 | **B급** | | |
| | | ○ **재학생**: 직전 1년(2개 학기) 대회 성적 기준 | | | |
| | | - 전국규모이상의 대회 우승자 | **A급** | | |
| | | - 전국규모이상의 대회 2~3위 입상자 | **B급** | | |
| | 학부생으로서 국가대표로 선발된 학부생 | ○ **국가대표 장학생:** 본교 재학생 중 올림픽종목 국가대표 선발자 (본교 졸업 시까지) | **A급** | | |
| **자아실현 장학금**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학부 및 대학원생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인복지법 1~3급),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 **A급** | 대학회계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 |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장애인복지법 4~6급),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 **C급** | | |
| | | ※ **신(편)입생은 직전학기 성적과 관계없이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 | | | |

<table>
<tr><th>장학금명</th><th>수혜자격(대상)</th><th>지급 기준 및 범위</th><th>장학등급</th><th>지급재원</th><th>제출서류</th></tr>
<tr><td rowspan="2">북한이탈주민<br>장학금</td><td rowspan="2">북한이탈주민에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학부생</td><td>○ 북한이탈주민 본인의 경우<br>※ 직전학기 성적제한 없음</td><td>A급</td><td rowspan="2">대학회계</td><td rowspan="2">-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br>- 학력확인서<br>-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td></tr>
<tr><td>○ 북한이탈주민 자녀인 경우<br>※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이상인 자</td><td>A급</td></tr>
<tr><td>우수신입생<br>장학금</td><td>수시 및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부생</td><td>○ 2018학년도 이전 선발자
<table>
<tr><th>장학금종류</th><th>지 급 내 용</th></tr>
<tr><td>전체수석합격자</td><td>. 전학년 등록금 전액 면제<br>. 교재비 학기당 50만원 지급<br>. 학생생활관 무료입사(1년간)</td></tr>
<tr><td>전체차석합격자</td><td>. 전학년 등록금 전액 면제<br>. 교재비 학기당 30만원 지급<br>. 학생생활관 무료입사(1학기)</td></tr>
<tr><td>단과대학별 수석합격자</td><td>· 전학년 등록금 전액 면제<br>. 교재비 학기당 20만원 지급</td></tr>
<tr><td>단과대학별 차석합격자</td><td>· 전학년 등록금 전액 면제<br>. 교재비 학기당 10만원 지급</td></tr>
</table>
○ 2019학년도 이후 선발자
<table>
<tr><th>장학금 종류</th><th>지 급 내 용</th></tr>
<tr><td>전체수석합격자</td><td>· 전학년 등록금 전액 면제<br>. 교재비 학기당 100만원 지급</td></tr>
<tr><td>우수인재합격자</td><td>· 전학년 등록금 전액 면제<br>. 교재비 학기당 20만원 지급</td></tr>
</table>
○ 수혜자격 및 지급 기준<br>- <별표6> 우수신입생장학금 수혜자격 및 지급기준에 따름</td><td></td><td>대학회계 및<br>발전기금</td><td></td></tr>
<tr><td>학·군제휴<br>장학금</td><td>대학원생으로 학·군 제휴 협약에 따라 학군제휴 추천을 받은 자</td><td>○ 신입생 : 직전학기 성적과 상관없이 수업료 30% 면제<br>○ 재학생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이상인 자에게 수업료 30% 면제<br>※ 규정학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td><td></td><td>대학회계</td><td>학·군 제휴 입학 확인 자료</td></tr>
</table>

| 장학금명 | 수혜자격(대상) | 지급 기준 및 범위 | 장학등급 | 지급재원 | 제출서류 |
|---|---|---|---|---|---|
| **외국인학생 장학금** | 외국인전형(정원외)으로 입학(편입학 포함)한 외국인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자<br>(단, 2020학년도 이후 정원내 외국인 편입생도 동일적용) | ○ **학부 신(편)입생** | | 대학회계 | - 어학성적 증명서 |
| | | -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 **A급** | | |
| | | -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 **B급** | | |
| | | -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영어능력시험(TOEFL 550, CBT210, iBT 80, IELTS 5.5, TEPS 550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 이상 | **D급** | | |
| | | ○ **대학원 신(편)입생** | | | |
| | | -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 **A급** | | |
| | | -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영어능력시험(TOEFL 550, CBT210, iBT 80, IELTS 5.5, TEPS 550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 이상 | **C급** | | |
| | | (단, 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장학생, 예체능학과, 이공계 입학생은 **등록금 전액 면제**) | **A급** | | |
| | | - 교수추천 입학생 | **C급** | | |
| | | ○ **학부 재학생: 한국어능력시험(TOPIK) 4 급 이상 취득자 중 직전학기 성적기준에 따라 지급** | | | |
| | | - 직전학기 성적 4.0 이상인 자 | **A급** | | |
| | | - 직전학기 성적 3.5 이상인 자 | **B급** | | |
| | |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인 자 | **C급** | | |
| | | -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인 자 | **수업료 10%면제** | | |
| | | ○ **대학원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이상인 자에게 예산에 따라 수업료 50% 까지 지급 가능 | | | |
| **정부초청 외국인학생 장학금**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부 및 대학원생 | ○ 국립국제교육원 장학기간 미경과자(정규학기)<br>-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기준 등록금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면제<br>○ 국립국제교육원 장학기간 경과자(초과학기)<br>-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자격 인정시 등록금 전액 면제 | | 대학회계 | 정부초청장학생 선발 결과 통보 |

| 장학금명 | 수혜자격(대상) | 지급 기준 및 범위 | 장학등급 | 지급재원 | 제출서류 |
|---|---|---|---|---|---|
| **ODA협력 장학금** | 학부생(신, 편입생)으로서, 다음 해당자<br>1. 국제개발협력 인재 육성을 목표로 ODA(국제개발협력위원회 지정 중점협력 대상국) 국가의 자매대학 학생으로 한국어 능력이 편입학 조건에 부합한 자<br>2. 다문화 인재양성을 위해 ODA 국가의 외국 국적 결혼이민자 | ○ **지급기준 : 재학기간 중 학업성적(평점)이 $B^0$이상 충족**<br>1. **ODA 국가의 자매대학 학생(편입생)**<br>- 최대 2년 동안 **등록금 전액 면제 및 생활관비 전액 지원**<br>※ 생활관비는 재단법인 본교 발전기금재단에서 지원<br>2. **ODA 국가의 외국 국적 결혼이민자(신, 편입생)**<br>- 신입학은 최대 4년, 편입학은 최대 2년 **등록금 전액 면제**<br>○ **선발절차**<br>- 대외협력실(국제교류팀)에서 선발<br>1. 자매대학 장학생은 자매대학 총장 또는 학장이 추천<br>2. 결혼이민자 장학생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발 | | 대학회계 및 발전기금 | 대외협력실(국제교류팀) 장학생 선발 결과 통보 |
| **6·25 UN군 참전 외국인 유공자 후손 장학금** | 6·25전쟁에 UN군으로 참전한 외국인 유공자의 후손으로써 참전 유공자 후손임이 증명된 자 | ○ 지급기준: 참전 외국인의 손·자녀로써 직전학기 성적 70점(2.0) 이상인 자<br>※ 신입생은 직전학기 성적 제한 없음<br>- 학부 최대 4년(편입생 2년), 대학원 최대 2년 등록금 전액 면제 | A급 | 대학회계 | 대외협력실(국제교류팀) 장학생 선발 결과 통보 |

<별표3>

## 해람장학금 종류 및 선발기준(제7조 관련)

<table>
<tr><th>장학금명</th><th>선발대상</th><th>선발 및 지급 기준</th><th>지급재원</th><th>제출서류</th></tr>
<tr>
<td>공로장학금</td>
<td>1. 국제적, 전국적 수준의 학술, 문예, 예술, 체육 등 분야의 각종 행사(대회, 전시, 발표, 경연)의 입상자 및 사회봉사, 효행 등 분야의 수상자(체육특기자 제외)<br>2. 각 시(군) . 도의 기관장, 사회단체장, 각 교육기관장, 언론기관, 봉사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br>3. 효행과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br>4. 학군후보생으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자<br>5.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대학 발전에 공헌한 자</td>
<td>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장학금(상한)</th><th rowspan="2">지급재원</th></tr>
<tr><th>분야</th><th>자격</th><th>최초</th><th>추가</th></tr>
<tr><td>국제 및 전국규모 행사(대회 등)</td><td>입상</td><td>100만원</td><td>30만원</td><td rowspan="3">발전기금 (총학생회 장학기금 수입이자 등)</td></tr>
<tr><td rowspan="2">사회봉사, 효행, 선행 등</td><td>전국규모 수상</td><td>100만원</td><td>30만원</td></tr>
<tr><td>자치단체규모 수상</td><td>70만원</td><td>20만원</td></tr>
<tr><td colspan="2">효행.선행 인정자</td><td>50만원</td><td>20만원</td><td>발전기금</td></tr>
<tr><td>학군후보생</td><td>학군단장 추천자</td><td colspan="2">1회당 100만원</td><td>대학회계, 발전기금</td></tr>
</table>
- 분야별 최초 장학금은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추가 장학금 매 학년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지급
</td>
<td>대학회계 및 발전기금</td>
<td>- 장학금 신청서<br>- 추천서 또는 공적조서<br>- 상장(표창장) 사본 또는 입상 증명서류<br>- 입상구분이 명시된 행사(대회 등) 프로그램<br>-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td>
</tr>
<tr><td>교수장학금</td><td>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부생</td><td>단과대학별 교수 모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1명 이상에게 학업장려금으로 지급</td><td>발전기금 (재직교원의 교수장학금 지원조성액)</td><td></td></tr>
<tr><td>국제화장학금</td><td>본교 국제화 프로그램인 해외연수, 해외봉사, 해외문화탐방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당부서에서 선발</td><td>장학생 선발 부서의 선발 계획에 따름</td><td>대학회계 및 발전기금</td><td></td></tr>
<tr><td>기초학문육성 장학금</td><td>기초학문분야에 재학 중인 학부 재학생</td><td>해당 학장이 선발하여 추천</td><td>발전기금</td><td></td></tr>
<tr><td>꿈동행장학금</td><td>가계곤란자로서 성적이 우수한 학부생</td><td>별도 계획에 따라 장학금을 생활비로 지급</td><td>대학회계</td><td></td></tr>
<tr><td>멘토링장학금</td><td>멘토링 참여 학생</td><td>별도 계획에 따라 멘토링제에 참여한 학생의 실적에 따라 장학금 지급</td><td>대학회계 및 발전기금</td><td>활동 일지 또는 보고서</td></tr>
</table>

| 장학금명 | 선발대상 | 선발 및 지급 기준 | 지급재원 | 제출서류 |
|---|---|---|---|---|
| **어학우수 장학금** | 학부 재학생 중 외국어 강좌 수강생으로 TOEIC 성적우수자<br>※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지급 | 장학생 선발 부서의 선발 계획에 따름 | 대학회계 | -장학금신청서<br>(어학원 수강확인 필)<br>-TOEIC성적 사본<br>(원본대조필 확인) |
| **언론원기자 장학금** | 언론원 기자로 활동 중인 학생 | 언론원장의 추천으로 선발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직책에 따라 차등 지급 | 대학회계 | |
| **대학원 연구장려 장학금** | **일반**대학원생 중 연구인력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하여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학생 |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선발 | **재정지원사업, 대학회계** | |
| **주소이전 장학금**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릉 및 원주로 주소를 이전한 학생 | 별도 계획에 따라 지자체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 | 대학회계 및 발전기금 | |
| **학생자치기구대표장학금** | 학생회 회칙으로 정한 학생회 임원 | 학생지원과에서 대상자를 선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직책에 따라 차등 지급 | 대학회계 | |
| **학생활동지원 장학금** | 각종 학교 활동에 참가한 학생 | 해당 학과 및 부서의 별도 계획에 따름<br><별표4> 참조 | 대학회계 | |
| **학습동아리 대표학생 활동장학금** | 학습동아리 참여 학생 중 대표(리더)학생 |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총장이 선발(단, 지도교수가 없는 경우, 동아리 운영 주관 부서에서 선발 추천함)하며,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장학금 지급 | 대학회계 | 활동 일지 또는 보고서 |
| **해외유학 장학금** | 학사운영규정 제113조에 따라 자매결연 외국대학에 파견하는 본교 위탁교육생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장의 추천으로 선발<br>1. 어학성적 우수자<br>2. 직전학기까지 성적이 평점평균 $B^0$ 이상인 자 | 발전기금 | |
| **FAM대표학생 활동장학금** | FAM 참여 학생 중 대표(리더) 학생 |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선발하며,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장학금 지급 | 대학회계 | 활동 일지 또는 보고서 |
| **SLC우수활동 장학금** | SLC프로그램 참여 실적이 우수한 학생 | 장학생 선발 부서의 선발 계획에 따름 | 대학회계 | |

〈별표4〉

## 학생활동지원장학금 종류 및 지원 사항(별표3 관련)

| 장학금명 | 장학금 지원 사항 | 비 고 |
|---|---|---|
| 봉사활동장학금 | 봉사활동 참여 학생 지원 | |
| 협력활동장학금 | 장애학생 도우미, 국제도우미 등 활동 지원 | |
| 학군후보생활동장학금 | 임영훈련 및 안보현장 견학 등 지원 | |
| 신문·방송제작지원장학금 | 취재 및 제작 활동, 교육 지원 | |
| 선수지원장학금 | 훈련 경비 및 생활관비 등 지원 | |
| 외국인유학생지원장학금 | 외국인 유학생 활동 지원 | |
| 복지지원장학금 | 건강검진 및 생활비(교재비) 등 지원 | |
| 교과보조장학금 | 교과 보조 활동 지원 | |
| 튜터장학생 | 튜터 활동 지원 | |
| 멘토링활동장학금 | 멘토링 참여 학생 지원 | |
| 동아리활동장학금 | 학습, 취업, 봉사 동아리 등 지원 | |
| 독서장려장학금 | 독서에세이 응모자, 다독자 등 선정 | |
| 활동장려장학금 | 자격증 취득자 및 어학성적 우수자 등 지원 | |
| 현장실습지원장학금 | 외부임상기관 실습 및 교육현장 방문 지원 | |
| 학술대회참여장학금 | 학술세미나 및 학술대회 참가 지원 | |
| 우수활동포상장학금 | 각종 공모전 및 행사 참여 실적에 대한 포상 | |
| 생활관임원장학금 | 학생생활관 임원 활동 지원 | |
| 홍보지원장학금 | 홍보대사 및 행사도우미 등 홍보 활동 지원 | |
| 학장장학금 | 대학발전 기여자 및 우수학생 지원 | |
| 학업성취장학금 | 학업 향상도가 월등한 학생 지원 | |

※ 장학명은 예산항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

<별표5>

# 희망나눔장학금 수혜자격 및 지급 기준(별표2 관련)

## 1. 목적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함

## 2. 면제범위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준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면제비율을 총 감면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

## 3. 수혜자격 및 지급기준

| 수혜자격 | 지급 기준 |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등록금 전액 면제)<br>직전학기 성적 2.0 미만인 자(수업료 20% 면제) |
| 차상위계층인정자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등록금 전액 면제)<br>직전학기 성적 2.0 미만인 자(수업료 20% 면제) |
| 저소득층인정자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학기별 선발 기준에 따름 |

※ 신·편입생은 직전학기 성적과 상관없이 선발

## 4. 제출서류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적용 시 제출서류 불필요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장학금신청서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나. 차상위계층인정자 : 장학금 신청서 1부, 차상위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다. 저소득층인정자

1) 부모 중 1명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예 :부모 중 1명만 보험가입자인 경우)
- 장학금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3개월 이내 납부영수증 가능) 1부,
- 의료보험증 사본 1부(부양가족명단 확인용으로 학생본인이 피부양자 명단에 등재된 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상에 부모 또는 보험가입자와 본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호적등본 제출

2) 2인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예 :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부(父)가 지역건강보험, 형(兄)이 직장건강보험인 경우)
- 장학금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3개월이내 납부영수증 가능) 각 1부(납부자 모두)
- 의료보험증 사본 1부(부양가족명단 확인용으로 학생본인이 피부양자 명단에 등재된 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상에 부모, 또는 보험가입자와 본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호적등본 제출

3) 부모가 아닌 형제자매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예 : 부모의 소득이 없어 형(兄)의 직장의료보험에 본인 및 가족이 편입된 경우)
- 장학금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3개월이내 납부영수증 가능) 1부,
- 의료보험증 사본 1부(부양가족명단 확인용으로 학생본인이 피부양자 명단에 등재된 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상에 부모 또는 보험가입자와 본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호적등본 제출

## 5. 유의사항

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 시 2인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자 모두의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누락 및 허위 제출 시 선발에서 제외

나. 희망나눔장학생으로 추천된 학생의 장학금 신청서 및 각종 증명서는 단과대학별로 최소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함

<별표6>

# 우수신입생장학금 수혜자격 및 지급 기준(별표2 관련)

**1. 목적**

우리대학교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하여 우수 신입학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선발대상**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 2018학년도까지는 정시모집에서만 선발

**3.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가. 2018학년도 이전 우수신입생**

| 장학금 종류 | 지 급 내 용 | 지급 기준 |
|---|---|---|
| 전체수석합격자 | · 전학년 등록금 전액 면제<br>· 교재비 학기당 50만원 지급<br>· 학생생활관 무료입사(1년간) | ㅇ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3.5이상인 경우 지급<br>ㅇ 지급기간 : 성적미달 학기를 포함하여 8학기 이내 (단, 치의예과 입학생은 12학기 이내)<br>ㅇ 교재비 및 학생생활관비는 발전기금재단 예산에서 지급 |
| 전체차석합격자 | · 전학년 등록금 전액 면제<br>· 교재비 학기당 30만원 지급<br>· 학생생활관 무료입사(1학기) | |
| 단과대학별 수석합격자 | · 전학년 등록금 전액 면제<br>· 교재비 학기당 20만원 지급 | |
| 단과대학별 차석합격자 | · 전학년 등록금 전액 면제<br>· 교재비 학기당 10만원 지급 | |

※ 전체수석·차석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과는 단과대학별 수석·차석장학생 선발 제외

**나. 2019학년도 이후 우수신입생**

| 장학금 종류 | 지 급 내 용 | 지급 기준 |
|---|---|---|
| 전체수석합격자 | · 전학년 등록금 전액 면제<br>· 교재비 학기당 100만원 지급 | ㅇ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3.5이상인 경우 지급<br>ㅇ 지급기간 : 성적미달 학기를 포함하여 8학기 이내 (단, 치의예과 입학생은 12학기 이내)<br>ㅇ 교재비는 발전기금재단 예산에서 지급<br>ㅇ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br>ㅇ 중도학업포기자는 선발 제외 |
| 우수인재합격자 | · 전학년 등록금 전액 면제<br>· 교재비 학기당 20만원 지급 | |

**다. 2022학년도 이후 학과 우수신입생**

| 장학금 종류 | 지급내용 | 지급기준 |
|---|---|---|
| 학과수석 합격자 | 교재비 학기당 20만원 지급 | • 수시 최초합격자에 한해 지급<br>•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3.5이상인 경우 계속 지급<br>• 중도학업포기자는 선발 제외 |

## 4. 우수신입생장학생 선발 기준

| 장학금 종류 | 선발 기준 | 비 고 |
|---|---|---|
| 전체수석합격자 | 모집시기별 최초합격자 중 전체수석 합격자 | 수시, 정시 분리 선발 |
| 우수인재합격자 | 단과대학별 최초합격자 중 입학성적이 상위 1.2% 이내인 자 | (단과대학별 합격자×1.2%)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선발인원 배정 |
| | 자유전공학부 최초합격자 중 입학성적이 상위 1.2% 이내인 자 | (자유전공학부 합격자×1.2%)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선발인원 배정 |

※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분리하여 최초 합격자 성적에 따라 선발

※ 수시 및 정시모집별 전체수석 및 우수인재합격자 선발인원은 학과별 최대 1명으로 제한

※ 장학생 선발자의 미등록 및 등록포기에 따른 장학생 변경 선발 미적용